

의안번호	2200509
의 퇴 인	박성준 의원
회 답 일	2024.07.05.
추 계 번호	24C046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기존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중단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 32.1조원, 2029년 26.7조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7.3조원(연평균 29.4조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제1항)	36.1	34.7	33.5	32.4	31.1	167.7	33.5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제5항)	△4.0	△3.9	△4.0	△4.2	△4.4	△20.5	△4.1
합 계(안 제4조)	32.1	30.8	29.5	28.2	26.7	147.3	29.4
- 국비	24.6	23.5	22.6	21.6	20.5	112.7	22.5
- 지방비	7.6	7.2	6.9	6.6	6.2	34.5	6.9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0~17세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u>18세 미만</u> 의 아동에게 <u>매월 50만원</u> 을 지급한다. (제5항) 삭제 ※ (현행)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4조제1항)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3.12.)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며, 국고보조율과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아동 수를 적용하되, 아동수당 지급률은 2024년 기준 97.2%를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국고보조율은 2024년 예산 기준 국고보조율 75.55%를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4조제5항 삭제) 개정안에 따라 기존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던 급여 조항이 삭제” 되는데 따른 재정소요 감소액을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관련 재정소요 감소액을 추계함
 - － 부모급여는 2024년 0세 아동에게 100만원, 1세 아동에게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본 추계서에서는 동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기간 동안 감소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함
 - － 개정안 시행 이후 가정보육 되고 있는 2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이 가정보육 되는 2세 미만 아동에게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현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¹⁾

1) 부모급여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보육료 예산의 경우 법 제4조제5항이 삭제되더라도 동 법 제34조(무상보육)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소요 변동은 아니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국고보조율은 2024년 예산기준 68.34%를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4조제1항)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인 0~17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인 기존 0~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

[표 2] (안 제4조제1항)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천명, 만원, 개월, %,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 지급대상자 수(A)	6,625	6,358	6,136	5,931	5,700	30,751	6,150
월 지급액(B)	50	50	50	50	50	—	50
지원개월 수(C)	12	12	12	12	12	—	12
평균 지급률(D)	97.2	97.2	97.2	97.2	97.2	—	97.2
합계(A×B×C×D)	38.6	37.1	35.8	34.6	33.2	179.3	35.9
— 국비	29.2	28.0	27.0	26.1	25.1	135.5	27.1
— 지방비	9.4	9.1	8.7	8.5	8.1	43.8	8.8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8세 미만 아동수에 1인당 월 지급액 10만원을 곱하여 산출

[표 3] (안 제4조제1항)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 : 2025~2029년

(단위: 천명, 만원, 개월, %,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급대상자 수(A)	2,177	2,046	1,953	1,898	1,872	9,946	1,989
월 지급액(B)	10	10	10	10	10	50	10
지원개월 수(C)	12	12	12	12	12	60	12
평균 지급률(D)	97.2	97.2	97.2	97.2	97.2	-	97.2
합계(A×B×C×D)	2.5	2.4	2.3	2.2	2.2	11.6	2.3
- 국비	1.9	1.8	1.7	1.7	1.6	8.8	1.8
- 지방비	0.6	0.6	0.6	0.6	0.5	2.8	0.6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7.7조원(연평균 33.5조원)으로 추계됨

[표 4] (안 제4조제1항)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A)	38.6	37.1	35.8	34.6	33.2	179.3	35.9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B)	2.5	2.4	2.3	2.2	2.2	11.6	2.3
추가재정소요(C=A-B)	36.1	34.7	33.5	32.4	31.1	167.7	33.5
- 국비	27.3	26.2	25.3	24.5	23.5	126.7	25.3
- 지방비	8.8	8.5	8.2	7.9	7.6	41.0	8.2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 제4조제5항 삭제)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기존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던 급여 조항이 삭제” 되는데 따른 재정소요 감소액을 추계함

- (감소되는 재정소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1

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표 5] (안 제4조제5항) 감소되는 재정소요 :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0세 아동, 월 100만원 재정소요(A)	2.6	2.6	2.7	2.9	3.0	13.8	2.8
1세 아동, 월 50만원 재정소요(B)	1.4	1.3	1.3	1.4	1.4	6.8	1.4
합계(C=A+B)	△4.0	△3.9	△4.0	△4.2	△4.4	△20.5	△4.1
－ 국비	2.7	2.7	2.8	2.9	3.0	14.0	2.8
－ 지방비	1.3	1.2	1.3	1.3	1.4	6.5	1.3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가정양육수당 등 만 2세 미만 아동 대상 지원제도 설계에 따라 결과값은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